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지침

1. 배경 및 목적

-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민지원사업비의 체계적·효율적 집행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2. 기본방침

- 주민지원사업비는 「폐촉법」, 공사의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 고시(제2018-01호)” 및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간접영향권지역 가구별(현물) 지원 고시(제2018-02호)”와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지침(세부시행기준 등 포함)’에 따라 집행
- 모든 주민지원사업은 지원지침에 따라 사업 주체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반드시 주민지원협의체 심의·의결 및 공사의 검토·승인 이후에 해당사업 추진(사업비는 단계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은 전체공동사업과 마을가꾸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마을가꾸기사업은 마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공동사업 또는 가구별(현물)사업으로 추진
- 2018년 하반기 중에 제2매립장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제2매립장의 주민지원사업비(2018년 조성 사업비 포함)는 「폐촉법」에 따라 제2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해산되기 이전에 사업계획 확정

- 주민지원사업 추진과정의 민원발생 개연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고,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지침의 합리적 개정·시행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3. 주민지원기금 운용 및 사업비 배분

① 주민지원기금 운용

- 주민지원기금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반입수수료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징수규정」 [별표 1] 제5항의 주민지원기금 세부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
- 당해연도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구분·배정하여 운용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금 결산 실시

② 사업비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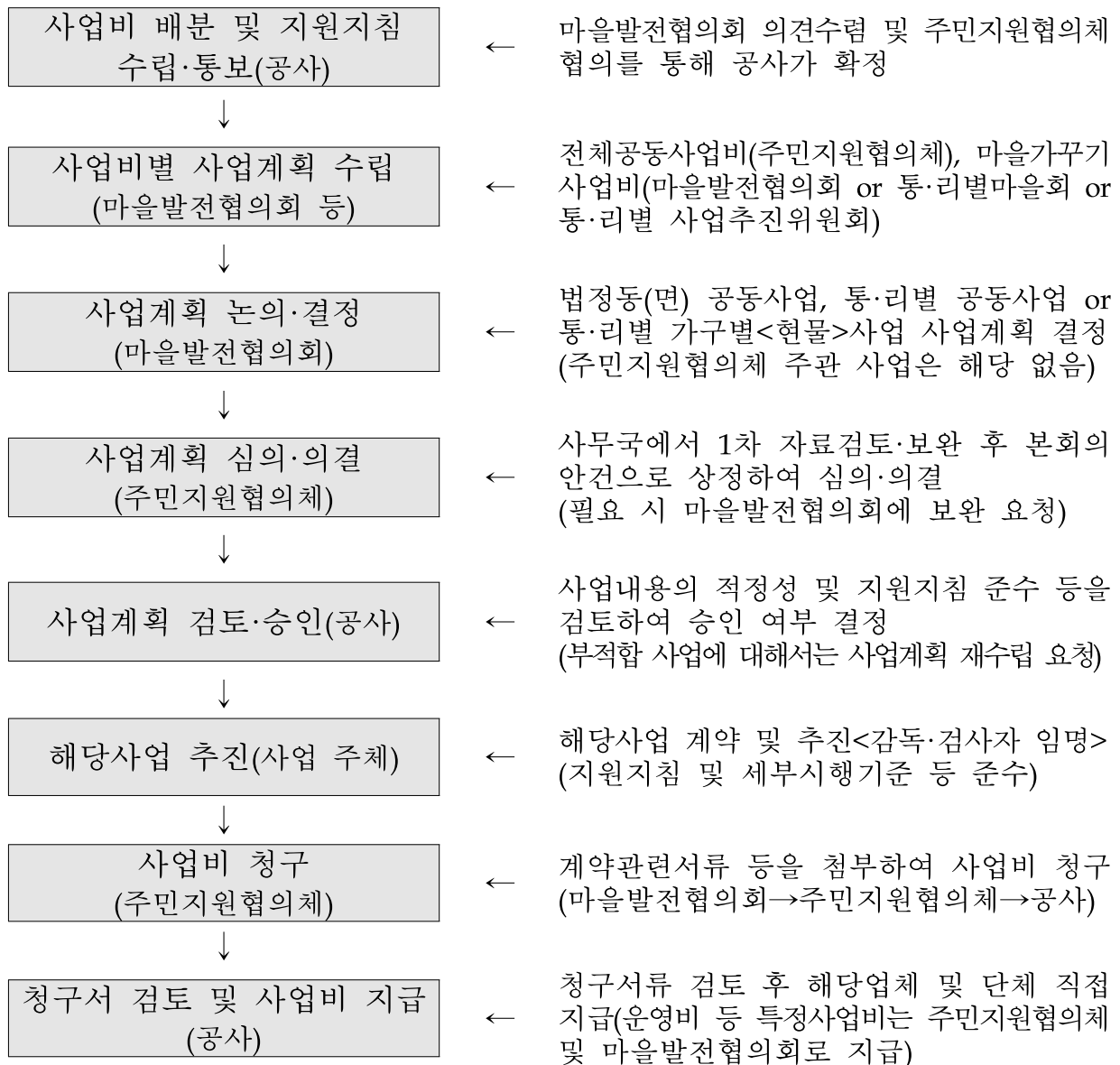
- 제2매립장의 주민지원사업비는 2016. 8. 5. 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간 합의에 근거하여 2015년도분부터는 전체공동사업비 30% 및 마을가꾸기사업비 70% 비율로 배분하고, 마을가꾸기사업비의 마을별 배분비율은 오류동 28.5%, 왕길동 38.0%, 경서동 20.7%, 양춘읍 12.8%로 배분(전체공동사업비 및 마을가꾸기사업비 배분비율은 변경 가능)
※ 2017년도분 주민지원사업비는 마을가꾸기사업비로 100% 배분·확정
- 환경영향등급 및 세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마을발전협의회 및 주민지원협의체 협의를 통해 배분·확정된 마을가꾸기사업비는 필요시 법정동(읍)별 마을발전협의회 주관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통·리별로 배분·집행

4. 주민지원사업 추진방법 및 대상사업

① 추진방법

- 주민지원사업은 전체공동사업과 마을가꾸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간접영향권 지역 가구별(현물) 지원 고시(제2018-02호)”에 근거하여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중 미집행된 사업비에 한하여 마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공동사업 또는 가구별(현물)사업으로 추진
- 주민지원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전체공동사업)와 마을발전협의회 또는 통·리별 마을회 또는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마을가꾸기사업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통·리별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통·리별로 마을회 또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결과로 사업계획 확정
 - ※ **통·리별 마을회 또는 사업추진위원회**는 통·리장 주관으로 통·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아파트 동대표, 마을발전협의회 위원, 부녀회장 및 회원, 노인회장 및 회원 등의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 통·리장이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로 갈음할 수 있음
- 통·리별로 주민지원사업(공동사업 또는 가구별현물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상회 및 공동 계시판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사업추진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모든 주민지원사업은 반드시 사업계획(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 등 포함)에 대한 마을발전협의회 논의·결정, 주민지원협의체 심의·의결 및 공사의 검토·승인을 득한 이후에 해당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단계별(계약, 준공 등)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마을발전협의회가 주민지원협의체를 경유하여 공사에 청구

○ 사업추진절차(흐름도)



통·리별 마을회 또는 사업추진위원회는 자체 규약(회칙 등)을 제정하여야 하며,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회의록 및 참석자명부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마을발전협의회 논의·결정, 주민지원협의체 심의·의결 및 공사의 검토·승인 절차 이행(임의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사업비 미지급)

※ 시설공사 등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 및 검사자를 임명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준공금 지급요청 시에는 준공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대상사업

- 공동사업(전체, 법정동<면>, 통·리)은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관련 [별표 3]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세부 내용 고시(제2018-0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유형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심의·의결 및 공사가 검토·승인한 사업에 한함
- 가구별(현물)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간접영향권지역 가구별(현물) 지원 고시(제2018-02호)”에 근거하여 추진하되, 현물 지원 품목 및 구매·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시행기준 별도 수립·시행

5.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① 지원대상

-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대상은 2016. 11. 30. 공사 사장이 고시한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 결정(제2016-01호)” 제5호(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 및 제6호(지원기준)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한 세대에 한하여 적용
- 당해연도분 주민지원사업비는 직전년도 12. 31. 이전에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전입하여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일까지 계속하여 실제로 거주한 세대에 한하여 적용하되, 건강검진 등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통·리별 마을회 또는 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가구별(현물)사업에 대해서도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을 일괄 적용하며, 거주기간도 통·리별로 임의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마을 특수성을 감안하여 거주지가 노인복지시설, 병원 및 공장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지원대상기간 중 주변영향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주변영향지역 안에서 거주지가 변경(법정동 및 통·리 변경)된 세대는 해당연도별로 거주기간이 긴 통·리에서 일괄 지원

-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대상 판단을 위한 거주기간 및 실거주 여부 확인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세부시행기준으로 규정

② 지원기간

- 제2매립장의 주민지원사업비(2018년 조성 사업비 포함)는 「폐촉법」에 따라 제2매립장의 주민지원협의체가 해산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제2매립장 종료 시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리별로 시행하는 가구별(현물)사업에 대해서는 2019. 12. 31.까지 지원
- 다만, 주민지원협의체 심의·의결 및 공사의 검토·승인을 통해 사업 계획이 확정되었는데도 제2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해산될 때까지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지원되지 못한 전체공동사업비와 마을가꾸기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주민지원협의체 사무국 또는 해당 마을발전협의회에서 공사에 직접 사업비를 청구하고, 공사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6. **마을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소유권 확보 및 사후관리**

① 재산 소유권 확보

- 마을가꾸기사업 결과물로 확보된 공공시설,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마을발전협의회 또는 통·리별 마을회 또는 통·리별 사업 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되, 동 재산에 대해서는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음

- 공사가 마을발전협의회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 확보된 건축물 등의 불법 용도변경 및 매각 등의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유권 반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담보 등으로 제공한 경우 담보 해제 시까지 해당지역 배분액 중 담보에 제공된 금액 범위내에서 환수 조치
- 다만, 공사가 제2매립장의 종료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 결정(제2016-01호)”을 폐지 고시한 이후에는 소유권이 있는 마을발전협의회 또는 통·리별 마을회 등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필요 시 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 또는 총회를 통해 해당 재산 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음

② 소유 재산 사후관리

- 마을가꾸기사업 등으로 소유권이 확보된 재산에 대해서는 마을발전협의회 또는 통·리별 마을회 등에서 사후관리방법을 결정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동사업의 취지에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함
- 마을가꾸기사업 등으로 소유권이 확보된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운영비(전기료, 수도료 등)는 법정동(읍)별로 배분된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하며, 동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년도 정산서 및 운영비 세부내역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이 지원지침은 2018. 5. 10.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지원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추진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 및 공사에서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및 재수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검토·승인 절차 없이 사전 계약을 체결한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는 공사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해당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이 지원지침 시행일 이전에 주민지원협의체 심의·의결 및 공사의 검토·승인 절차 없이 마을발전협의회 또는 통·리에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입찰공고 포함)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2018. 5. 21.(월)까지 사업계획서 및 계약서(입찰공고서 같음 가능) 등을 첨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 통보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심의·의결 및 공사 검토·승인 절차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

※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계획은 불인정

- 마을발전협의회 또는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 등은 이 지원지침과 세부시행기준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결정·시행할 수 없으며, 지원지침 및 세부시행기준의 해석 또는 추가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사에 공식적으로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는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사항을 검토·통보하여야 함

[붙임 1] 폐촉법 시행령 [별표 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붙임 2]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 고시(제2018-01호)

[붙임 3]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간접영향권지역 가구별(현물) 지원 고시(제2018-02호)

[붙임 1]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광산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사업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로시설	소규모 도로 등
	항만시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교육·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붙임 2] 신규 주민지원(공동)사업 지원에 대한 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의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 고시

1.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신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가. 소득증대사업

공동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공동 영농·영어시설 기자재 구입(비료·농약 등 소모품 포함), 수익형 부동산 설치·매입(단순 토지 매입 등 제외)

나. 복리증진사업

지역주민 건강검진, 지역주민 국내외 견학(단순 관광 제외), 공공의료 지원 순환버스 운영,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공용 CCTV 설치, 지역 일자리창출 교육(청·장·노년층), 마을 공동 휴양시설 회원권(콘도, 리조트 등), 공용 체육시설 설치 및 기자재 구입, 주변지역 사회관변

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 주변지역 문화·화합·체육 행사 지원, 고령자 및 노인성 질환자 등 지원

다. 육영사업

초·중·고등학교(영유아 보육시설 포함) 시설물 설치 및 기자재 구입 또는 운영 지원, 분야별 지역 영재 지원, 독서실 설치

2. 기타사항

가.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는 신규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나. 신규 주민지원사업은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구별(세대별)로 지원할 수 없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간접영향권지역 가구별(현물) 지원 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현물)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간접영향권지역 가구별(현물) 지원 고시

1. 대상지역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16-01호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2. 대상사업비 :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중 미 집행된 사업비
3. 지원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지원기준·방법 및 가구별 현물 지원 품목
 - 가. 지원기준 및 방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지침으로 정한다.
 - 나. 가구별 현물 지원 품목 및 구매·지급방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지침으로 정하되,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은 제외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